

사업으로 지정하여 경기도 지역으로 이
전할 경우 폐차장부근 주민들은 환영할
것이나, 차량소유자가 직접 폐차시키고
자 할때 행정절차 및 원거리에 따른
불편이 예상되며

○현재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에 불법적으
로 방치된 차량을 각 구청에서 수거하
여 폐차시키고 있으나 서울시내에 폐차
장을 없앨 경우 방치차량 처리문제가
복잡해 질 것으로 생각함.

○한편,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토지가격
이 비싼 서울시내에서 넓은 부지를 필
요로 하는 폐차장사업은 토지이용 측면
에서도 비효율적이며, 주변환경 문제로
민원발생이 다발하므로 장기적 계획을
세워 폐차사업을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
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.

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柳準向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.
다음은 交通局長으로부터 本請願에 대해서
執行部の 意見を 듣도록 하겠습니다. 局長님,
하실 말씀 없으세요?

○交通局長 黃哲民 局長입니다.

小委員會를 構成하셔서 상세하게 問題에 접
근해 보시면 충분히 委員님들께서 把握하실
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九老本洞에
있는 廢車場 移轉問題에 대해서 그간 여러
차례 民願을 提出했고, 또 對話도 했습니다만
속시원한 結論이 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
이르고 있습니다.

우리 서울시 廢車業務 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.

.....
(報告)

□서울시 폐차업무 현황

○폐차장 현황

| 업 체 명 | 용도지역 | 면 적 | 1일 처리능력 | 허가일시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한국슈레다산업-주 | 준 공 업 | 19,607m ² | 200대 | '83.7.1 |
| 서울폐차산업-주 | " | 5,700m ² | 100대 | '85.7.18 |

○폐차처리 실적

| 구 분 | '94. 8월말 | | '93 | | '92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서울시 | 타시도 | 서울시 | 타시도 | 서울시 | 타시도 |
| 폐차 실적 | 20,899 | 29,019 | 32,523 | 34,192 | 27,305 | 32,670 |
| | (41.8%) | (58.2%) | (48.7%) | (51.3%) | (45.5%) | (54.5%) |
| 계 | 49,918 (75,000대) | | 66,715 | | 59,975 | |

※폐차발생 추이 : '95 : 110,000대 (300대/일)

'96 : 147,000대 (400대/일)

'97 : 210,000대 (575대/일)

○폐차장 허가 요건

—관련법규

- 자동차관리법 제49조 [자동차관리사업
의 허가등]
-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75조 [폐차업

의 시설기준]

○시설기준

- 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, 준공업지역
- 대 지 : 3,000m²이상
- 장 비 :
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압축기, 파쇄기, 전단기, 용해로 중 1식 이상 — 레카, 지게차, 중량기 각 1대 이상 — 환경관련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폐기물소각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1식 — 폐유·폐수처리시설 1식 <p>○ 폐차장 운영 실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우리시의 폐차장은 지역적으로 편중(도봉, 구로)되어 있어 1일평균 폐차 발생량 250대(차령 8년기준) 중 48%인 120여 대만 처리되고, 나머지 130대(52%)는 경기지역 17개 폐차장을 이용 폐차하고 있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허가요건(용도지역제한, 부지 3,000m²이상, 시설장비 및 환경관련시설 구비)이 까다롭기 때문에 증설이 거의 불가능함(86년 이후 신규허가 없음) — 설령 허가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인근주민의 반발로 추진이 불가능(예: 중량구 상봉동 삼표연탄부지)하며, 기존 업체도 근원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<p>○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그 동안 시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소음, 진동, 폐유 등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1억 3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8개 시설을 보강한 바 있음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<p>I. 소음방지 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 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요예산(천원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완 료 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방음벽 설치(1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5m×16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,45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3. 7. 23</td> </tr> <tr> <td>방음벽 설치(2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.5m×136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3. 12. 20</td> </tr> <tr> <td>전단기 설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톤/시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80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4. 8. 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소음, 진동, 분진의 주요발생 원인인 파쇄기 가동을 95.6월 이후 중단 계획(고물반입 중단) ※현재 일요일은 가동을 중단하고 전단기와 병용으로 파쇄기 가동시간을 단축(5시간→3시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음·진동 검사 결과 ————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| | 시 설 명 | 규 모 | 소요예산(천원) | 완 료 일 | 방음벽 설치(1차) | 2.5m×16m | 19,450 | 93. 7. 23 | 방음벽 설치(2차) | 8.5m×136m | 130,000 | 93. 12. 20 | 전단기 설치 | 20톤/시간 | 1,800,000 | 94. 8. 30 | | | | | | | | | | | |
| 시 설 명 | 규 모 | 소요예산(천원) | 완 료 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방음벽 설치(1차) | 2.5m×16m | 19,450 | 93. 7. 2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방음벽 설치(2차) | 8.5m×136m | 130,000 | 93. 12. 2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단기 설치 | 20톤/시간 | 1,800,000 | 94. 8. 3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사 항 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사 일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측정기준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측정 결과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3. 6. 1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dB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6dB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선 명령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3. 6. 2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dB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7dB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치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3. 9. 2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dB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8dB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 동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3. 6. 2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dB(v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4dB(v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4. 9. 2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dB(v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4dB(v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검 사 항 목 | 검 사 일 | 측정기준치 | 측정 결과 | 비 고 | 소 음 | 93. 6. 11 | 50dB | 56dB | 개선 명령 | 93. 6. 22 | 50dB | 47dB | 기준치이내 | 93. 9. 23 | 50dB | 48dB | " | 진 동 | 93. 6. 22 | 60dB(v) | 44dB(v) | " | 94. 9. 23 | 60dB(v) | 54dB(v) | " |
| 검 사 항 목 | 검 사 일 | 측정기준치 | 측정 결과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소 음 | 93. 6. 11 | 50dB | 56dB | 개선 명령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93. 6. 22 | 50dB | 47dB | 기준치이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93. 9. 23 | 50dB | 48dB | "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진 동 | 93. 6. 22 | 60dB(v) | 44dB(v) | "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94. 9. 23 | 60dB(v) | 54dB(v) | "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II. 분진방지 시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 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요예산(천원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완 료 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살 수 시 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φ50×3개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4. 6. 15</td> </tr> <tr> <td>자 동 살 수 시 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개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4. 7. 30</td> </tr> <tr> <td>작 업 장 재 포 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500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4. 9. 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시 설 명 | 규 격 | 소요예산(천원) | 완 료 일 | 살 수 시 설 | φ50×3개소 | 9,000 | 94. 6. 15 | 자 동 살 수 시 설 | 1개소 | 3,000 | 94. 7. 30 | 작 업 장 재 포 장 | 2,500평 | 15,000 | 94. 9. 30 | | | | | | | | | | | |
| 시 설 명 | 규 격 | 소요예산(천원) | 완 료 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살 수 시 설 | φ50×3개소 | 9,000 | 94. 6. 1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자 동 살 수 시 설 | 1개소 | 3,000 | 94. 7. 3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작 업 장 재 포 장 | 2,500평 | 15,000 | 94. 9. 3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Ⅲ. 폐유분리 시설

| 시 설 명 | 규 격 | 소요예산(천원) | 완 료 일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배 수 로 정 비 | 40cm×30cm×146m | 13,000 | 94. 8. 10 |
| 유 수 분 리 조 확 층 | 2.5m×2m×6m | 9,000 | 94. 8. 10 |

Ⅳ. 진입로 변경(계획) — 교통소통 문제 해결

도로개설 계획

- 구로역 ↔ 남부순환도로(L=1,440m B=20m)
 - 공사비총액 : 359억원
 - 완료 예정시기 : 1998년~2000년
 - '94년 예산 반영(보상비) : 20억원 책정
 - '95년 예산 요구(보상비) : 100억원
- ※도로 개통시기와 맞추어 주진입로 변경

□검토 결과

- 최근 폐차 발생추이를 볼때 매년 격증의 예상되고 서울시의 폐차시설은 절대 부족함('95 : 300대/일, '96 : 400대/일, '97 : 575대/일)
- 적정부지가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는 기존업체를 행정지대로 강제이전 시키는 무리임.
- 또한 시민들의 불편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에서 부지확보 제공하는 문제도 여타 유사한 업종에 대한 형평성과 개인수익사업체에 대한 특혜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- 대안없이 폐차장을 경기도지역(서울시내 적정부지 없음)이전 시킬 경우 시민의 불편과 방치차량 증가가 예상됨.
- 또한 폐차업무의 정책방향도 대도시에서의 폐차장 증설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폐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(90년 3월)
- 폐차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입법예고('94.8.17) 중에 있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증설시키고자 하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함
- 결론적으로, 현시설을 유지·존속시키면서 일련의 폐차작업 과정을 기계화, 현대화시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, 근원적으로

이전하는 문제는 회사 스스로가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이상 저회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柳準向 局長 수고 많았습니다.

그러면 이 請願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들도록 하겠습니다. 質疑와 答辯은 交通局長을 상대로 해서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십시오.

朴夏榮委員님 말씀해 주세요.

○朴夏榮委員 朴夏榮委員입니다.

몇 가지 事項 質問드리겠습니다. 먼저 한국 슈레다산업에 있어서 許可의 適法性 問題입니다. 혹시 違背되는 缺格事項은 없는지, 許可要件上?

○交通局長 黃哲民 네, 缺格事項이 없습니다.

○朴夏榮委員 따라서 그렇다면 廢車場을 運營함에 있어서 各種 附帶施設이 필요할 것입니다. 이러한 附帶施設은 완벽한 것인지, 또 許可官廳인 서울시의 指示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答辯해 주세요.

○交通局長 黃哲民 현재 이분들이 예를 들면 조그만 違反事項이 있으면 住民들의 集團 民願에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隣近住民으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.

○朴夏榮委員 다음 質問드리겠습니다.

住民의 民願事項을 들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, 또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. 아울러서 自由民主主義 體制에 있어서 企業의 自由原則에 본다면 移轉에 따른 強制規定이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問題는 判가를 된다 이렇게 봅니다. 어떻습니까?

○交通局長 黃哲民 強制規定은 合法的으로 許